|  |  |  |
| --- | --- | --- |
|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실시세칙(시행)**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  식약감계 [2014] 16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무원은 전국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저질 모조품의 제조 및 판매를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조직에게 불법저질 모조품의 제조 및 판매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벌안건 정보를 법에 의거하여 공개하는 의견(시행)과 함께 이양>(국발 [2014] 6호)의 요구에 근거하여, 총국은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실시세칙(시행)>(첨부1)을 제정하고, 이를 인쇄발행하여 집행하며, 유관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각 성(구, 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고, 조직협력을 강화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업무를 원활히 진행한다.  2. 식품약품 감독관리체제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역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책임지고 유관부문과 협조하여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를 진행하는 부문 및 단위를 확정하고, 상급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3.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를 발표하는 형식은 <행정처벌정보공개표>(첨부2)의 양식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며,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내용은 <행정처벌정보공개표(예제표)>(첨부3)의 내용을 참조하여 기입한다.  4. 2014년 9월부터 각 성(구, 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불법저질 모조품의 제조 및 판매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안건의 정보공개 수량을 통계내고 종합한 후, 총국의 사찰국 <안건통계표>와 함께 상부에 보고한다.  첨부: 1.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실시세칙(시행)  2.행정처벌정보공개표  3.행정처벌정보공개표(예제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014년 8월 11일  첨부1: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실시세칙(시행)**  **제1조**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운영을 규범화하며 대중의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무원<불법저질 모조품의 제조 및 판매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벌안건 정보를 법에 의거하여 공개하는 의견(시행)>(국발 [2014] 6호)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세칙에서 말하는 행정처벌안건 정보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하고, 법에 의거하여 조사한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의 관련정보를 지칭한다.  **제3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전국의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업무를 책임지고 지도, 협조, 감독한다.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해당 행정기관이 조사한 행정처벌안건 정보를 책임지고 공개한다.  **제4조**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는 공평, 공정하며 대중의 편의에 입각한 원칙을 준수하고, 지체없이 정확하게 행정처벌안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제도를 완벽히 구축해야 하고, 전문기구를 지정하여 본 부문의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관련 일상업무를 책임지게 한다. 해당 기구의 구체적인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며 심사하고,  (2) 본 부문의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의 관리제도 및 업무절차를 조직하고 제정하며,  (3) 행정처벌안건의 공개정보에 대해 내부 심사결정과 정보발표를 책임지고,  (4) 본 부문이 공개하는 행정처벌안건 정보를 지체없이 유지, 보호하고 갱신하며,  (5) 본 부문과 관련한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에 관한 기타 업무.  **제6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직책권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행정처벌안건 정보는 주도적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1) 행정처벌결정서 문서번호, 안건명칭,  (2) 처벌을 받은 자연인의 성명, 처벌을 받은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조직기구대마, 법정대표인 성명,  (3) 법률, 법규 또는 규장을 위반한 주요사실,  (4) 행정처벌의 종류, 의거,  (5) 행정처벌의 이행방식과 기한,  (6) 처벌결정을 내린 행정집법기관의 명칭과 날짜.  행정처벌안건의 위법주체가 미성년자와 관련된 경우, 미성년자의 성명 등 해당 미성년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부호로 대체 또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처리한다.  **제7조**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하고 법에 의거하여 조사한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는 원칙상 모두 공개해야 하지만, 아래의 상황은 제외한다.  (1) 국가비밀과 관련되거나 국가안전, 공공안전, 경제안전 및 사회안정에 위험을 미치는 정보  (2) 상업비밀 및 자연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전화번호, 재산상황 등 개인의 사적인 비밀과 관련된 정보  (3) 행정기관의 내부 관리정보 및 토론, 연구 또는 심사과정 중인 정보  (4)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정보.  **제8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공개하지 아니한 행정처벌안건 정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본 세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고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본 세칙 제7조의 기타 공개하지 아니한 행정처벌안건 정보는 본 부문의 주요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본 세칙 제7조 제(2)항의 규정된 정보에 대해 권리인의 동의를 거쳐 공개하거나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본 부문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하기로 결정한 내용과 이유를 권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9조** 행정처벌안건 정보는 주로 행정사무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고, 이와 동시에 공고란, 신문발표회, 간행물, 방송과 텔레비전 등 대중이 이해하고 조회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개한다.  **제10조** 주도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행정처벌안건 정보는 행정집법기관이 처벌결정 또는 처벌결정 변경일로부터 20 업무일 내 공개하며, 공개기한이 2년보다 짧으면 아니 된다.  **제11조**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협조체제를 완벽히 구축해야 한다. 기타 행정기관이 관련될 경우, 정보를 공개하기 전 원활한 소통 및 정확한 확인을 진행함으로써 공개한 정보의 정확성 및 일치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2조**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업무의 심사제도, 사회평의제도와 책임추궁제도를 완벽히 구축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업무에 대하여 심사, 평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13조**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기구는 본 세칙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지방정부에 건의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력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다.  (1)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행정처벌안건 정보내용을 지체없이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3) 행정처벌안건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4)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행정처벌안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5) 본 세칙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14조** 본 세칙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5조** 본 세칙은 인쇄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  | **食品药品监管总局**  **关于印发食品药品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  **实施细则（试行）的通知**  食药监稽〔2014〕166号  各省、自治区、直辖市食品药品监督管理局：  根据《国务院批转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领导小组关于依法公开制售假冒伪劣商品和侵犯知识产权行政处罚案件信息的意见（试行）》（国发〔2014〕6号）要求，总局制定了《食品药品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实施细则（试行）》（附件1），现印发执行，并就有关事项通知如下：  一、各省（区、市）食品药品监管局要高度重视食品药品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工作，加强组织协调，做好本行政区域内的食品药品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工作。  二、食品药品监管体制改革尚未完全到位的地区，由本地区的食品药品监管部门负责协调相关部门确定食品药品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的部门和载体，并报上级主管部门备案。  三、食品药品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发布形式按《行政处罚信息公开表》（附件2）的格式进行发布，具体填写内容参照《行政处罚信息公开表（例表）》（附件3）的内容填写。  四、从2014年9月开始，各省（区、市）食品药品监管局应将制售假冒伪劣商品和侵犯知识产权案件信息公开数量统计汇总后，在总局稽查局《案件统计表》中一并上报。  附件：1.食品药品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实施细则（试行）  　2.行政处罚信息公开表  　3.行政处罚信息公开表（例表）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2014年8月11日  附件1：  **食品药品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  **实施细则（试行）**  **第一条** 为促进食品药品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规范运行，保障公众的知情权、参与权和监督权，根据国务院《关于依法公开制售假冒伪劣商品和侵犯知识产权行政处罚案件信息的意见（试行）》(国发﹝2014﹞6号)，制定本细则。  **第二条** 本细则所称行政处罚案件信息，是指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适用一般程序，依法查办的食品药品行政处罚案件的相关信息。  **第三条**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负责指导、协调、监督全国食品药品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工作。  县级以上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公开本行政机关查办的行政处罚案件信息。  **第四条** 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应当遵循公平、公正、便民的原则，及时、准确地公开行政处罚案件信息。  **第五条** 县级以上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完善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制度，指定专门机构负责本部门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日常工作。该机构具体职责如下：  （一）监督、指导和考核下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工作；  （二）组织制定本部门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的管理制度和工作程序；  （三）负责行政处罚案件公开信息的内部审核和信息发布；  （四）及时维护和更新本部门公开的行政处罚案件信息；  （五）本部门有关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的其他工作。  **第六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在职责权限范围内向社会主动公开以下行政处罚案件信息：  （一）行政处罚决定书文号、案件名称；  （二）被处罚的自然人姓名，被处罚的企业或其他组织的名称、组织机构代码、法定代表人姓名；  （三）违反法律、法规或规章的主要事实；  （四）行政处罚的种类、依据；  （五）行政处罚的履行方式和期限；  （六）作出处罚决定的行政执法机关名称和日期。  行政处罚案件的违法主体涉及未成年人的，应当对未成年人的姓名等可能推断出该未成年人的信息采取符号替代或删除方式进行处理。  **第七条** 适用一般程序，依法查办的食品药品行政处罚案件信息原则上都应当公开，下列情形除外：  （一）涉及国家秘密，或者可能危及国家安全、公共安全、经济安全和社会稳定的信息；  （二）涉及商业秘密以及自然人身份证号码、住所、肖像、电话号码、财产状况等个人隐私的信息；  （三）行政机关内部管理信息以及处于讨论、研究或者审查中的过程性信息；  （四）法律、法规规定的其他不宜公开的信息。  **第八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对不予公开的行政处罚案件信息进行审查。按照本细则第七条第（一）项的规定决定不予公开相关信息的，应当写明理由并报上一级机关批准；本细则第七条其他不予公开的行政处罚案件信息，报请本部门主要负责人批准。  对本细则第七条第（二）项规定的信息，经权利人同意公开或者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认为不公开可能对公共利益造成重大影响的，经本部门主要负责人批准，可以予以公开，并将决定公开的内容和理由书面通知权利人。  **第九条** 行政处罚案件信息主要通过政务网站公开，也可同时以公告栏、新闻发布会、报刊、广播和电视等便于公众知晓、查询的方式公开。  **第十条** 属于主动公开范围的行政处罚案件信息，自行政执法机关作出处罚决定或处罚决定变更之日起20个工作日内予以公开，公开期间不少于2年。  **第十一条** 各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健全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协调机制。涉及其他行政机关的，应当在信息公开前进行沟通、确认，保证所公开的信息准确一致。  **第十二条** 各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健全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工作考核制度、社会评议制度和责任追究制度，定期对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工作进行考核、评议。  **第十三条** 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机构违反本细则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上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责令改正；情节严重的，应建议地方政府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一）不依法履行行政处罚案件信息公开义务的；  （二）不及时更新行政处罚案件信息内容的；  （三）在公开行程处罚案件信息过程中违反规定收取费用的；  （四）公开不应当公开的行政处罚案件信息的；  （五）违反本细则规定的其他行为。  **第十四条** 本细则由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负责解释。  **第十五条** 本细则自印发之日起施行。 |